

영동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 예고

영동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영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17일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영동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('22.1.13. 시행)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표창 권한 부여
- 「영동군의회 표창 조례」를 제정함에 따라 「영동군의회 표창 규칙」은 폐지

3. 주요내용

- 「영동군의회 표창 규칙」 폐지

4. 의견제출

-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

영동군의회(조례심사특별위원회)

- 전 화 : 043)740-3033, FAX 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.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의회의회규칙 제 호

영동군의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

영동군의의회 표창 규칙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법

제79조(표창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
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
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.